

지속적인 예술활동에 위한 든든한 사외보장

예술인의 고용보험 포함

지속적인 예술활동에 위한 든든한 사외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든든한 사회보장

예술인 고용 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인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합니다.

또한, **여성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 및 실업 상태에서도
생활 안정을 보장받으며
이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1 (예술인) 프리랜서로 예술활동을 하며 활동 중단(실업)을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Yes

12p 이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No

12p 이등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

2 (예술인) 활동 중단(실업)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Yes

14p 이등
한눈에 보는 적용대상



No

24p 이등
구직급여

3 (사업주)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Yes

15p 이등
적용대상



No

46p 이등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4 (사업주) 다양한 계약 형태에 따라 누가 고용보험 신고·납부의 의무를 갖는지 알고 계신가요?



Yes

46p 이등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No

36p 이등
사업주 판단의 원칙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꼭 필요한 정보로 건너될 수 있어요!



5 (사업주) 계약한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Yes

66p 이등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



No

46p 이등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6 (사업주) 사례금 지급 시 보험료를 얼마 공제해야 하는지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Yes

66p 이등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



No

76p 이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 (예술인) (사업주)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세요?



Yes

76p 이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No

79p 이등
업무담당기관

8 (사업주) 보험 행정·사무 업무의 부담을 느끼시나요?



Yes

78p 이등
사무대행 협력기관



No

79p 이등
업무담당기관

목차

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소개

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12
② 예술인 고용보험의 성격	13
③ 한눈에 보는 적용대상	14
④ 적용대상	15
⑤ 적용제외	16
⑥ 예술인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17

FAQ 자주 묻는 질문

1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Q1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Q2 연구, 교육, 자문, 심사 등의 활동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 Q3 사업장의 대표이자 예술인인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Q4 월급이 아닌 작품의 완성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 Q5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중취득 및 소득합산 신고

- Q6 예술인이 복수의 계약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Q7 다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계약을 수행할 경우 언제부터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②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① 구직급여	24
② 출산전후급여	30

FAQ 자주 묻는 질문

32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 Q8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Q9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예술인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관련 유의사항

- Q1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Q11 계약만으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늦지 않을까요?

③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판단

① 사업주 판단의 원칙	36
② 사업주 판단: 제작사-소속사-예술인(3자 계약)	37
③ 사업주 판단: 단체 또는 팀 단위 계약	38
④ 사업주 판단: 하도급	39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	40

FAQ 자주 묻는 질문

41

사업주 판단

- Q12 명목상의 대표일 뿐 다른 팀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할 시에도 사업주가 되나요?
- Q13 개인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시에도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가지나요?

④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①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46
②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47
③ 일반예술인-취득신고 방법	52
④ 단기에술인-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	55
⑤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58
⑥ 접수현황 조회	62
⑦ 팩스 및 방문 신고	63
⑧ 보험료 납부 방법	63

⑤ 보험료 계산과 정산

①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	66
②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예시	67
③ 핵심용어	69

FAQ 자주 묻는 질문

71

보험료 계산

- Q14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Q15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Q16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납부 및 정산

- Q17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 Q18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⑥ 지원제도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6
② 사무대행 협력기관	78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담당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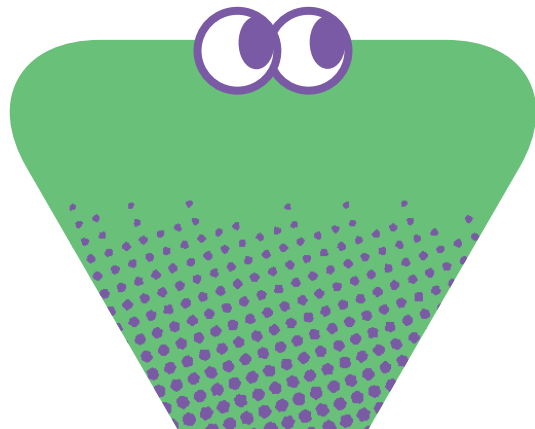
7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소개

8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사업 개요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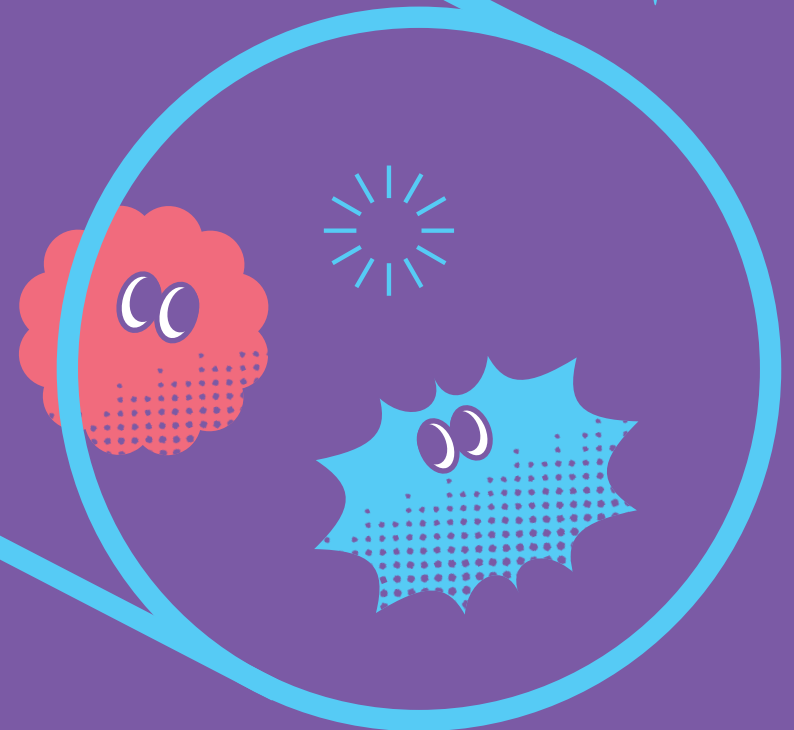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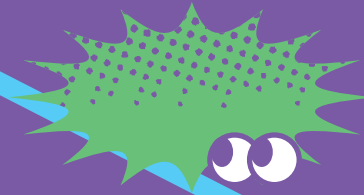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소개

1



- 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 ② 예술인 고용보험의 성격
- ③ 한눈에 보는 적용대상
- ④ 적용대상
- ⑤ 적용제외
- ⑥ 예술인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FAQ 자주 묻는 질문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직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있습니다. 예술인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상태에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



1
실업상태인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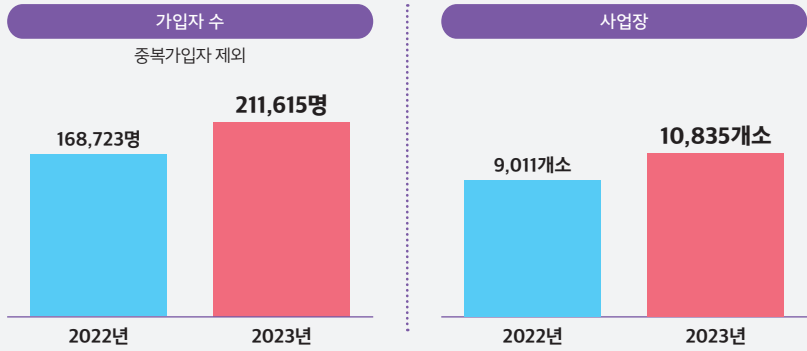


2
여성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상태에서도 생활 안정을 보장받으며, 이후의 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3
이와 같은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르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입현황



2 예술인 고용보험의 성격

▶▶▶ 당연 가입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것처럼, 예술인 역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해당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근로자, 예술인-예술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예술인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 가능

▶▶▶ 보험 신고·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예술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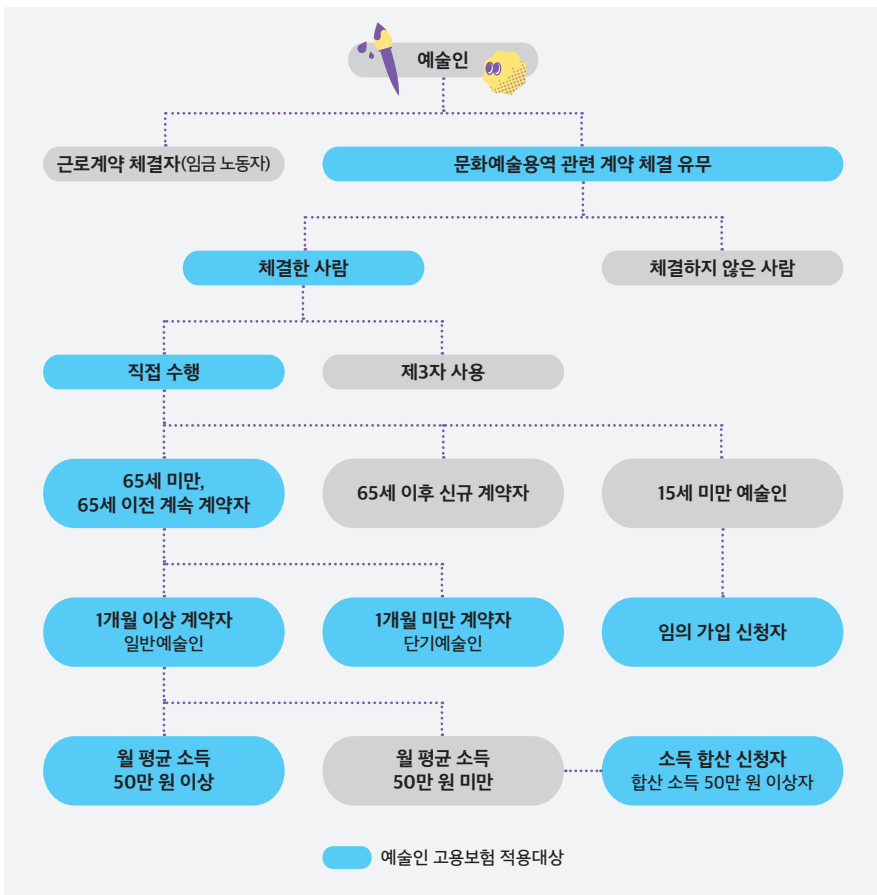
- 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사업주 측에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 제출방법 i)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ii) 팩스 및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팩스번호: 0505-290-3203
- ② 일반예술인이 소득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합산하여 적용기준 소득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이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취득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 제출방법 팩스 및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팩스번호: 0505-290-3203

3 한눈에 보는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구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단기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적용
일반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



4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 제도로, 예술인이

- ✓ 근로자가 아니면서
- ✓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 ✓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외국 국적자 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체류자격

당면적용(의무가입)	임의가입(본인의 선택으로 가입 가능)	적용제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 외 체류자격



5 적용제외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 ※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반드시 필요

소득제한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일 때 해당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 ※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은 50만 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합산을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경우

- 근로계약(통상 임금을 받으며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관련 계약
-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 ※ 다만,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이 포함된 저작권 계약은 그 노무제공의 대가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상 노무 관련 계약
-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관련 계약
- 행정·홍보·마케팅 노무 관련 계약

기타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6 예술인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구분	예술인	근로자	
적용 범위	적용대상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주요 적용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 원 이상 시 적용)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수급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또는 출산(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예술인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100%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기간	• 출산일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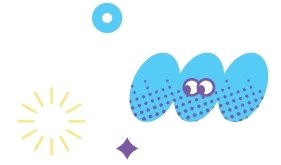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Q1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결과물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특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Q2 연구, 교육(강의), 자문, 심사 등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연구, 교육(강의), 자문, 심사 등의 업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의 형태로 타인의 문화예술 결과물 완성을 위해 창의적 재량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3 사업장의 대표이자 예술인인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장 또는 단체, 프로젝트의 대표가 개인자격(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타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유급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에서 문화예술관련 노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주와 피고용인으로 중복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4 시나리오 작가는 통상 월급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 되나요?

A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신작의 창작이나, 기존 작품의 개편 등 기간을 특정하여 제작사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은 문화예술관련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가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순수한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주장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확한 계약 기간과 보수 금액을 명시한 후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서면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용)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득 및 소득합산 신고

Q6 예술인이 복수의 계약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각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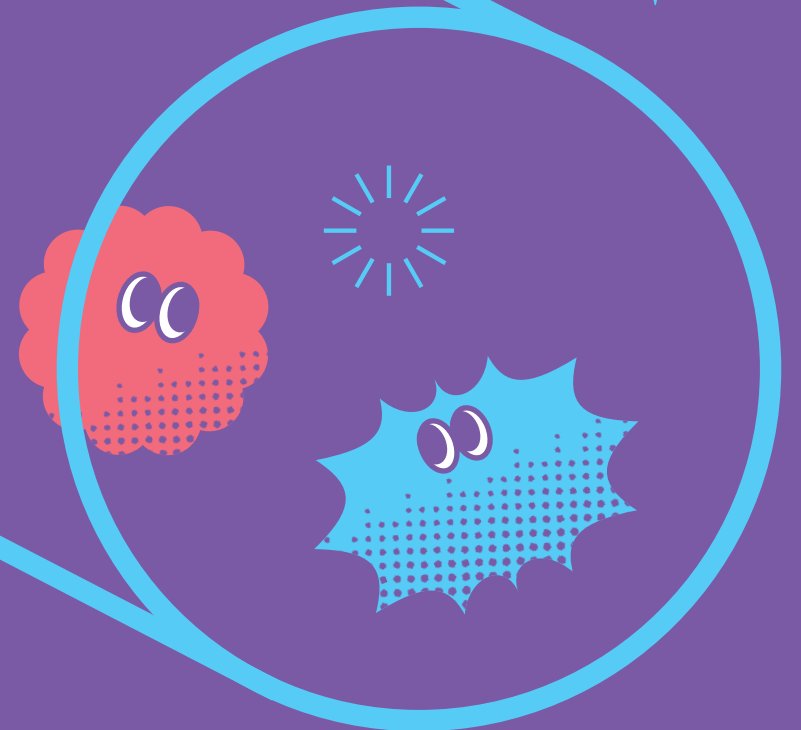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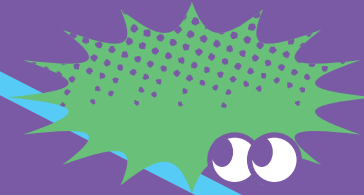
Q7 A 사업장에서 2024. 1. 1.~5. 30.간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B 사업장에서 2024. 3. 5.~6. 30.간 월평균소득이 40만 원인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언제부터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인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 3. 5.부터 합산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2024. 3. 5.)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이 신청은 합산한 적용기준 소득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인 2024. 4. 15.까지 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하면 소득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의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2024. 6. 1.에 합산소득이 50만 원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 합산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상실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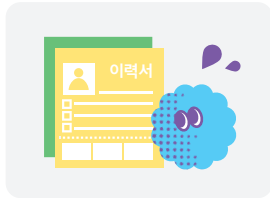
- ① 구직급여
- ② 출산전후급여

FAQ 자주 묻는 질문

1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급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에 있고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제한 사유란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나 예술인의 자발적인 이직 등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i)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이상을 변경하여 이직한 경우
 - ii)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iii)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어 이직한 경우
 - iv)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v)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총합 9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 고용 형태가 다수인 경우(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단기예술인은 월 11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로 산정되며, 월 11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일수를 22일로 나눈 값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 ■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기준)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

1 구직급여

지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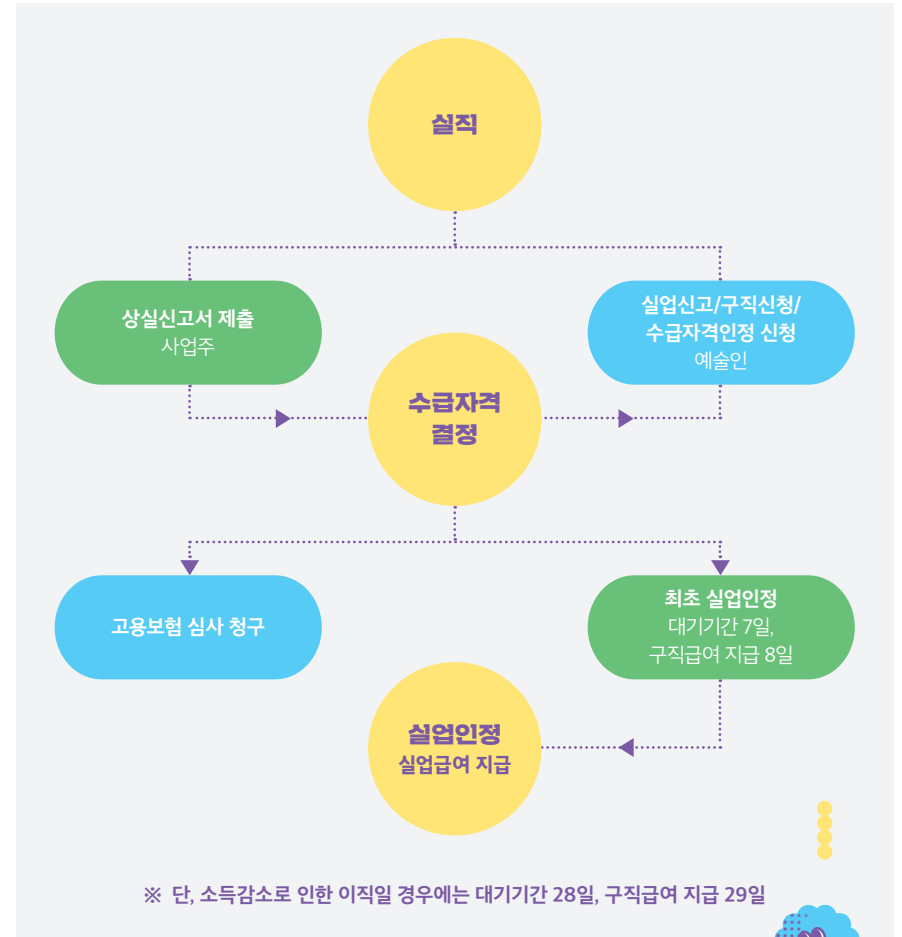
연령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들어갑니다.
 - 2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실업급여-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 3 ‘사전진단 질의응답’을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4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을 선택합니다.
→ 7번 절차로 이동
수급자격을 모를 경우, ‘유형 모름’을 선택하여 자신의 수급자격 유형 사전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5 수급자격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선택합니다.
 - 6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 7 모의계산 유형은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8 계산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기입한 후,
계산버튼을 눌러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1 구직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으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해당 예술인의 '상실신고(p.58 참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상실신고'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등록

자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고용24')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임신·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 활동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해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임신·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출산전후급여 신청은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 ■ 지급액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보수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액(월 기준)의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입니다.

■ ■ ■ 지급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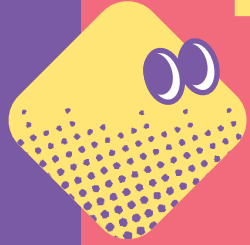
■ ■ ■ 온라인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들어갑니다.
-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 들어가, 좌측의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화면에 필수 입력 항목들을 기입하고,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출산(유산·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 ■ 방문신청

'고용24'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출산(유산·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Q8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으로 로그인하신 후, [증명원 신청/발급]-[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는데 예술인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1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 단위)} \div 9\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 단위)} \div 180\text{일}]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 단위)} \div 12\text{개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관련 유의사항



Q1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 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추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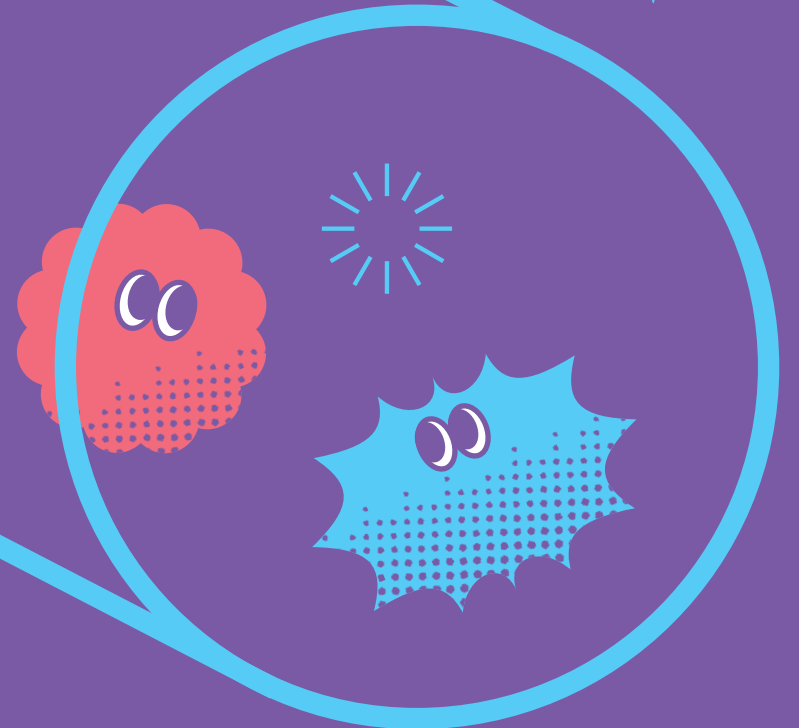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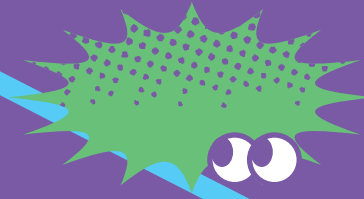
Q11 계약만료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실업 상태인데 이제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은 최종 이직일 기준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단위 기간과 신청 자격 등을 잘 파악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최대 150일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직 후 7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판단

3



- 1 사업주 판단의 원칙
- 2 사업주 판단: 제작사-소속사-예술인(3자 계약)
- 3 사업주 판단: 단체 또는 팀 단위 계약
- 4 사업주 판단: 하도급
-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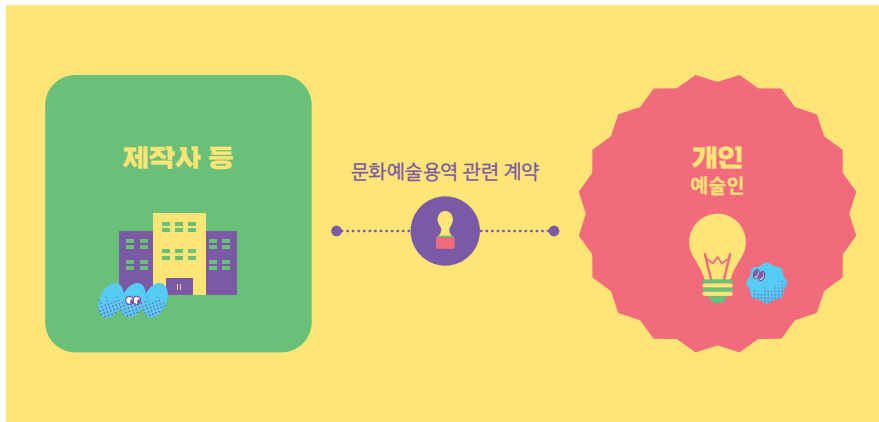
FAQ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주 판단의 원칙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예술인으로부터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당사자가 사업주(사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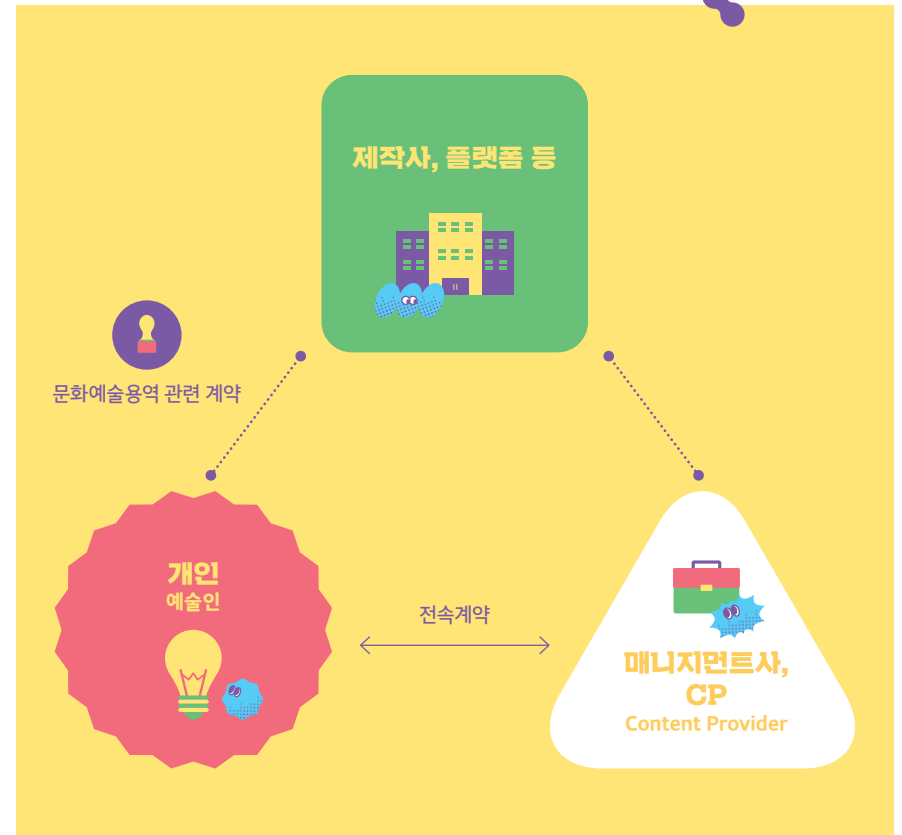


※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사업주 판단: 제작사-소속사-예술인(3자 계약)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와 예술인, 그리고 제작사 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제작사가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술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사무대행 계약이므로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은 제작사가 사업주로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주 판단: 단체 또는 팀 단위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가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대표)이지만 실제로 대표와 팀원 또는 조수가 함께 노무를 제공한다면, 계약당사자인 팀의 대표와 팀원, 조수 간의 위계 및 소득 배분에 따라 신고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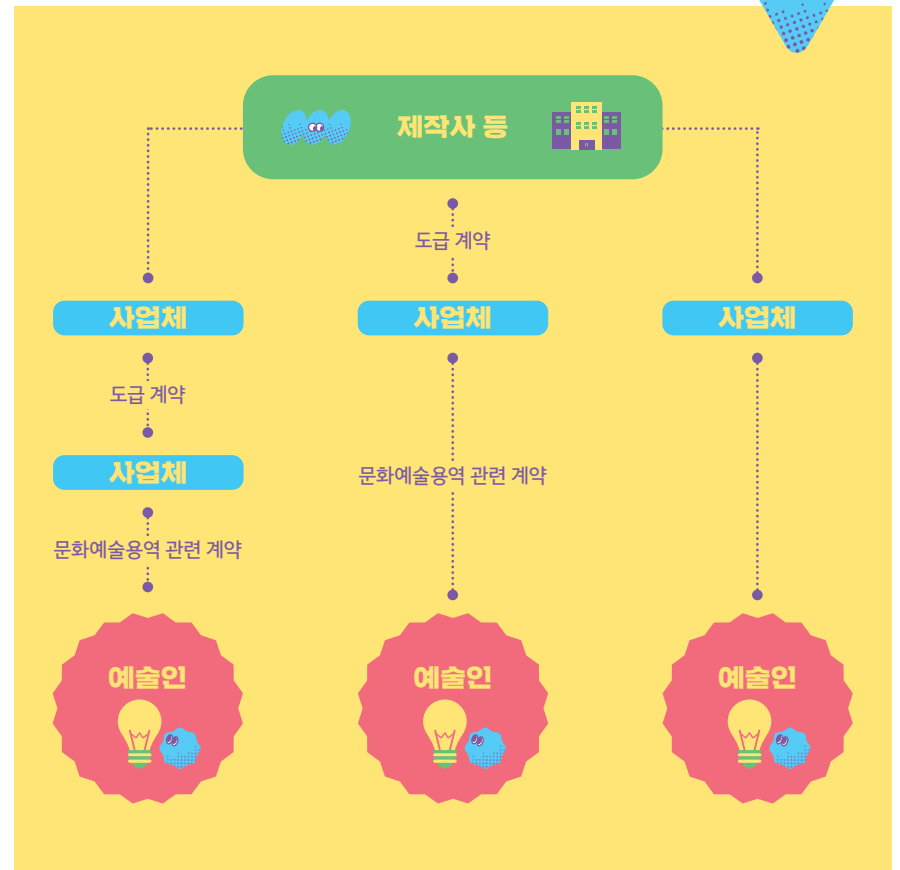
- 1 팀의 대표(계약당사자)가 다른 구성원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수익을 남기거나 손해를 감수한다면 **팀의 대표**가 사업주입니다. 이 경우, 팀의 대표는 팀원들의 고용보험 신고 사무를 맡아야 합니다.
- 2 팀의 대표(계약당사자)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제작사**가 사업주로서 팀의 대표를 포함하여 팀원, 조수 등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팀 단위 일괄계약 구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에 있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제작사 등이 대표예술인 외에 팀원이나 조수 등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사업주 판단: 하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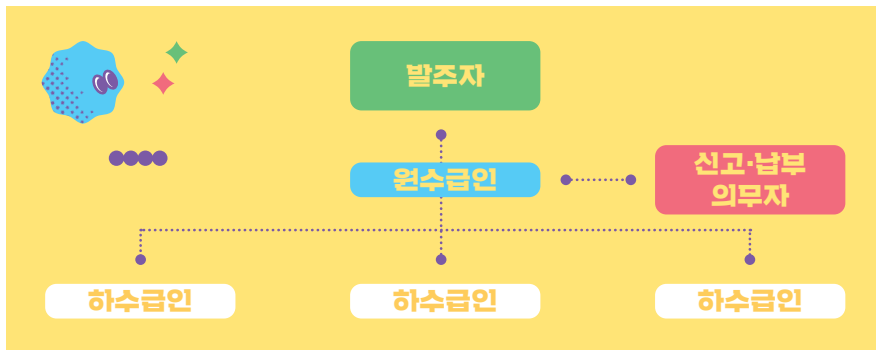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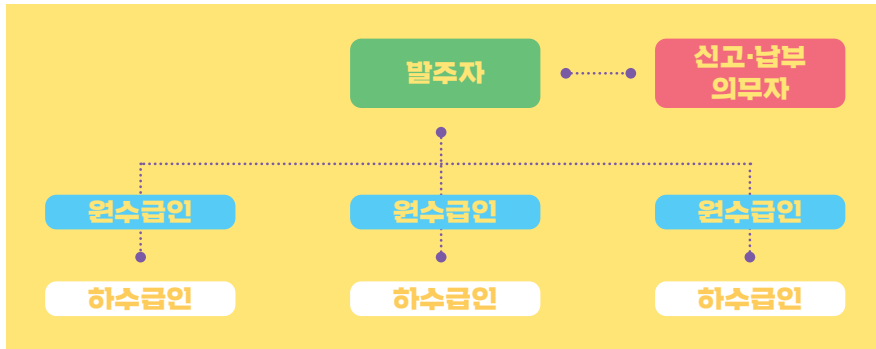
제작사 등과 계약을 맺은 사업체(법인, 개인사업자, 임의 단체 등)가 일부 업무를 다시 다른 사업체와 하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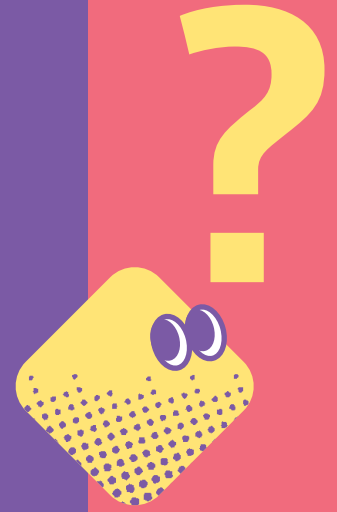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은 도급사업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신고·납부합니다.
-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신고·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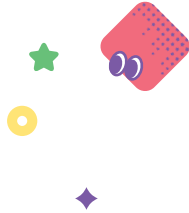
자주 묻는



!

질문

FAQ



Q12 합창단 소속이고, 연장자라 대표를 맡았지만 계약을 대표 명의로 할 뿐 다른 합창단원들과 똑같이 노래하고 사례금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등에서 공연 관련 계약을 진행할 때 예술인 사업장이니 제가 단원들의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곤란합니다.

A 대표 자격으로 계약한 후 사례금을 받는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 단원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원과 대표가 소득이나 위계에서 차이가 없고, 대표 자신이 예술인으로 참여하며, 상호 고용 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서상의 대표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대표와 단원 모두를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간이계약양식을 활용해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3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개인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 간 계약을 맺을 시, 자연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도록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 개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 개별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 반복적 노무 제공이 발생하였다고 판별이 가능한 사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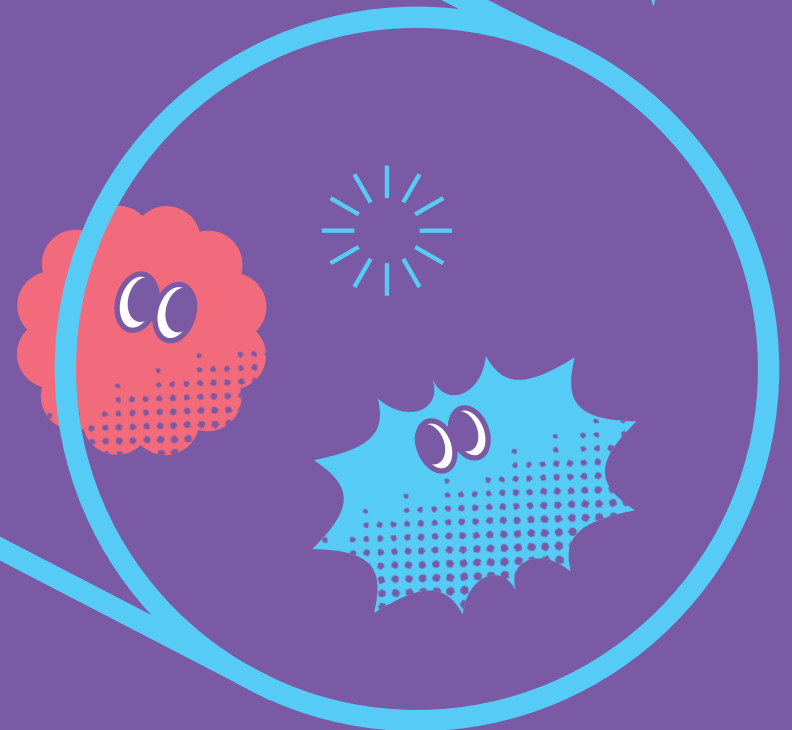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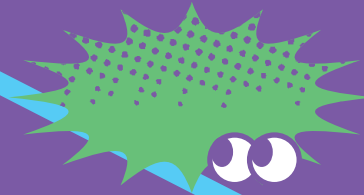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4



- ①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 ②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 ③ 일반예술인-취득신고 방법
- ④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
- ⑤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 ⑥ 접수현황 조회
- ⑦ 팩스 및 방문 신고
- ⑧ 보험료 납부 방법

FAQ 자주 묻는 질문



1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



4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2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은 **최초 1회** 신고 후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란에 기재합니다.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3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선택합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4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양식이 화면에 뜨면, 필수 입력 사항을 기입합니다.

5 상단의 [신고구분]은 '예술인종사'를 선택합니다.

신고구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종사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술인종사
------	--------------------------------	-----------------------------------	---

6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명칭, 사업장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명칭 *	<input type="text"/>						
사업장형태 *	<input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소재지 *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 전자우편주소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						
팩스번호	<input type="text"/>						
휴대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종 *	<table border="1"> <tr> <td>업태명</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종목명</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주생산품</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p>① 신재보험 건성(건축)공사-복합 현장에서 종사하는 건설 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살수차-고소작업차-키고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건설공사, 복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고]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인,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가시번호로 적용)]</p>	업태명	<input type="text"/>	종목명	<input type="text"/>	주생산품	<input type="text"/>
업태명	<input type="text"/>						
종목명	<input type="text"/>						
주생산품	<input type="text"/>						
원금(안)계좌 사립신고	은행명 <input type="text"/> 개계번호 <input type="text"/>						
	예금주명 <input type="text"/>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7 사용자(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임일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사용자(대표자)	
성명 *	<input type="text"/> 주민(여)국안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 전자우편주소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취임일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공동대표등록"/>	

8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합니다.

- ※ '소재지와 동일'을 선택하시면 입력하신 사업장 소재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지택주소와 동일'을 선택하시면 입력하신 사용자(대표자)의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text"/>
우편물 수령지 *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소재지와 동일 <input type="radio"/> 지택주소와 동일 <input type="radio"/> 직접입력

9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예술인수, 주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 [자료반영]란에서 '본사인 경우'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입력하신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성시근로자수	명 <input type="text"/>
성립일	<input type="text"/>
자료반영	신고대상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본사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전체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input type="text"/>
명칭 *	<input type="text"/>
소재지 *	<input type="text"/>
업종 *	업종명 <input type="text"/> 주생산품 <input type="text"/>
총 성시근로자수	명 <input type="text"/>
총 사업장수	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피보험자수	명 <input type="text"/>
예술인수 *	명 <input type="text"/>
종 피보험자수	명 <input type="text"/>
대규모기업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비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보험료 지원신청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10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일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 11-1** 일반예술인 취득신고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클릭한 후,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화면에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란에서 '신고'를 체크하여 예술인 취득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작성법은 '3. 일반예술인 - 취득신고 방법'(p. 52)참고

입사지정
취득신고
초기화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

취득신고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 - 예술인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취득신고

메뉴열기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마이메뉴 보기
입사지정자료 조회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2호의14서식

* 작성방식 선택
 직접입력
 역설파일 불러오기

[공통]

1. 1개월 미만 노무를 제공하는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공리하면 바로 이동)**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무제공물량통 특례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결정통증조사 취직신고(공리하면 바로 이동)**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1.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자동차(유류배송기)사 제외, 골프장 캐디 직종은 월평균보수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직종	신고방법
건설기계조종사(952), 살수차고소작업차(고크로인 조종사 (96))	산재보험 건설기계조종사 임직신고(클릭하면 바로 이동)에서 신고 ※자면신고사입장(건설업 및 문화업)에 통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통은 '23.7.1'부터 별도 별도 임직 신고 없이 보험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캐디(959)	<input type="radio"/> 23.12.31 이전 해당 화면에서 임직신고 가능 <input type="radio"/> 24.11 이후 고용-산재 영보수액 신고(공리하면 바로 이동)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직종	<input type="radio"/> 23.6.30 이전 해당 화면에서 임직신고 가능 <input type="radio"/> 23.7.1 이후 고용-산재 영보수액 신고(공리하면 바로 이동)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일 23.6.30 전(골프장 캐디의 경우 23.12.31 전) 임직신고시 유의사항
 산재보험의 방문판매용 임직 유휴 환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배송수단 환은 직종이 '택배기사', '배송서비스사'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장의 노무제공자 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임직신고는 직종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장의 노무제공자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으로직업이면 임직신고서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으로직업 각각 작성)
 유류배송기(전동크레프트)964의 경우 유류배송기사 등 불소속 은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를 입력할 경우 자동 산정됩니다.(역설파일 검토 후 하는 경우 포함)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신고 방식이 23기 이후(골프장캐디의 경우 24.11이후) 를 보소속 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속직단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 및 살수차고 소작업차(고크로인 조종사)가 부교고사입장에 통시하는 경우 임직신고제도를 유지합니다.

- 11-2** 일반예술인 취득신고와 연계하지 않는 경우 [취득신고]를 클릭한 후,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화면에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란의 '신고'를 체크해지 합니다.
※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의 경우 성립신고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처리완료 되어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이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p. 55) 참고

입사지정
취득신고
초기화

근로자자격취득신고 * 신고

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2** 하단의 [신고자료 검증] 버튼 클릭 후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입사지정
신고자료 검증
접수
초기화

3 일반예술인-취득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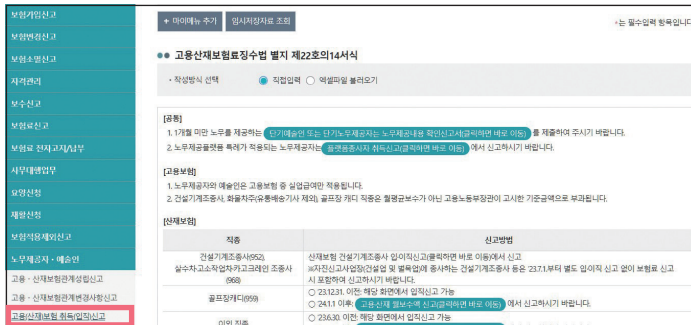
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예술인을 취득신고합니다. 계약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매월 보험료 고지
 ※ 계약 종료 시 상실신고 필수 '5. 일반예술인 - 상실신고 방법'(p.58)참고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3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를 선택합니다.



- 4 취득 신고서 양식이 화면에 뜨면, 화면의 필수 입력 사항을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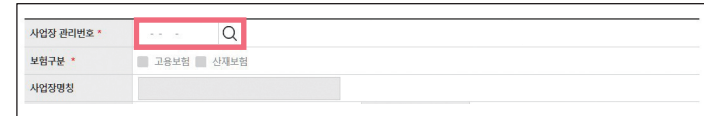
- 5 고용보험 취득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은 민원인이 화면에 보이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엑셀파일 불러오기'는 [샘플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엑셀파일 형식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신고방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신고할 때 용이합니다.



- 6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칸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대상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된 대상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2.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연계하여 바로 신고하는 경우 이 절차는 생략됩니다.



3 일반예술인-취득신고 방법

- 7 '+' 버튼을 눌러 행 추가 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검증을 완료한 뒤, 성명을 입력합니다.
 - ※ 해당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취득일, 직종부호를 입력합니다.
 - ※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계약금액÷개월 수)의 75%를 입력합니다.(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 ※ [직종부호] 칸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코드를 골라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8 소급취득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파일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9 대상자 1명의 입력을 마친 후에 신고대상이 더 있다면 '+' 버튼을 눌러 계속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난 후,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여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4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

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예술인의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상실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 2 [사업장]-[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3 [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선택합니다.

4 단기에술인-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

4 단기노무제공내용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 ※ '화면입력방식'은 민원인이 화면에 보이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엑셀파일 불러오기'는 [샘플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엑셀파일 형식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신고방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신고할 때 용이합니다.

고용신재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2호의7서식 및 제22호의16서식

작성방식 선택: 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5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보험 구분에 고용보험을 체크하고, 신고 년월을 선택합니다.
- ※ [사업장 관리번호] 칸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대상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된 대상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험구분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년월	2023년 12월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별첨 파일첨가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공사)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이동전화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대행기관번호		사무대행기관명칭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탭의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과구분부보 설정																			
보험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채류자격	전체	국적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0	1	2	3	4	5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직종		이직사유	-선택-																		
보수총액(과세소득)		임금종류																			
보험료과과구분(과종)	선택	보험료과과구분(사종)	선택																		

7 예술인의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성명, 노무제공일수, 직종, 이직사유, 보수총액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우측의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완료한 뒤, 성명을 입력합니다.
- ※ 보수총액은 계약금의 75%를 입력합니다. (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 ※ [직종부호] 칸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코드를 골라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종부호 검색		
직업명		조회
선택	부호	소분류 직업명
선택	441	(창작)문학
선택	442	(창작)미술
선택	443	(창작)사진
선택	444	(창작)건축
선택	445	(창작)음악
선택	446	(창작)극악
선택	447	(창작)무용
선택	448	(창작)연극
선택	449	(창작)영화
선택	450	(창작)연예
선택	451	(창작)영화
선택	461	(실연)문학
선택	462	(실연)미술
선택	463	(실연)사진
선택	464	(실연)건축
선택	465	(실연)음악

8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대상자추가]를 클릭하고,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더 있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입력합니다.

9 근로자 목록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서식인쇄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	초기화
------	------	---------	----	-----

5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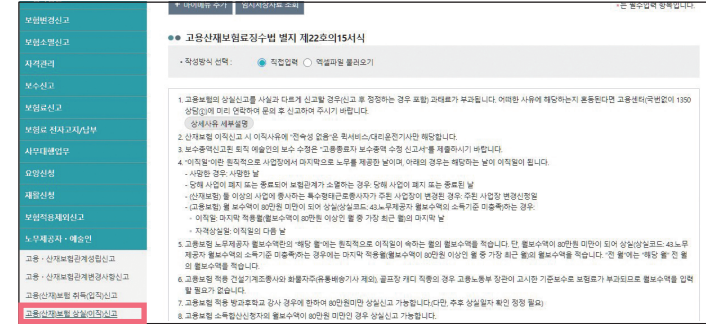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아 고용보험료가 계속해서 부과되며,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에서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며, 매월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험료 반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3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상실(이직)신고]를 선택합니다.



- 4 고용보험 상실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은 민원인이 화면에 보이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엑셀파일 불러오기'는 [샘플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엑셀파일 형식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신고방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신고할 때 유용합니다.



- 5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칸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대상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된 대상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 6 '+'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한 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검증을 완료한 뒤, 성명을 입력합니다.
 -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입력합니다.
 - ※ '상실일'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이 1월 31일인 경우, 2월 1일로 신고

※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 스스로 노무제공을 그만 둔 경우	11	개인 사정으로 자진 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반등 등으로 자진 이직
사업장 사정 또는 예술인의 귀책으로 그만 둔 경우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예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노무제공 계약 기간 만료되어 그만 둔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 7 '해당년도 보수총액'에는 이직일(마지막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 보수총액은 계약금의 75%를 입력합니다.(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 8 대상자 1명의 입력을 마친 후에 신고대상이 더 있다면 '+' 버튼을 눌러 계속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난 후,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여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 ※ 신고자료 검증 시 '연도 중 요율변경 보수총액 구분신고 대상입니다.'라고 뜨는 경우, 보수를 기간별로 구분하는 '보수총액구분신고'를 병행합니다.

6 접수현황 조회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4대공통서식]에서 접수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관련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 취득신고,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상실신고)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7 팩스 및 방문 신고 | 8 보험료 납부 방법

팩스 및 방문 신고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위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 보험취득·상실신고서(일반예술인)는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자료실 ➔ 서식자료 ➔ 고용보험 메뉴 탭에서 '예술인'으로 검색
- 서식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 팩스 접수: 0505-290-3203
※ 방문 접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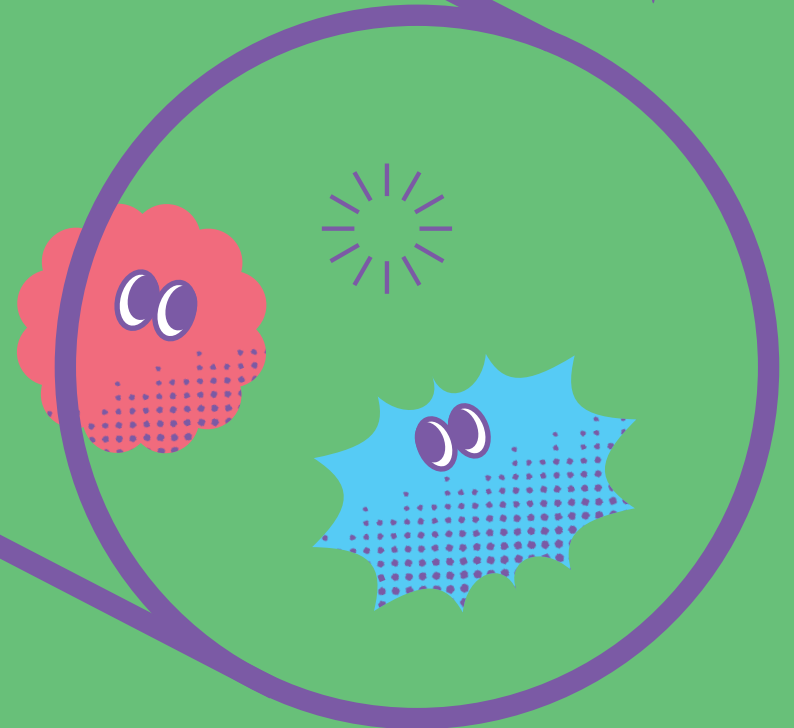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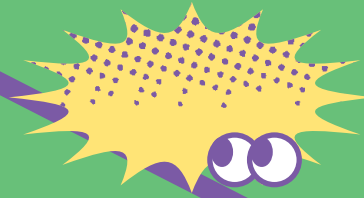
보험료 납부 방법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예술인 부담분을 공제한 후 사례금을 지급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 단기예술인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일반예술인의 취득(입직)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면, **신고한 달의 말일 경**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모든 예술인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되며,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 분을 합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보험 신고하거나 납부 기일을 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와 미납 지연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과 정산

5



- 1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
-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예시
- 3 핵심용어

FAQ 자주 묻는 질문

1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업장의 편리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에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보수액 확인), 예산을 편성할 때(사업주 예술인 몫의 보험료 산정), 예술인의 사례금을 지급할 때(보험료 차감액 산정)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QR

고용보험료 총액 = 계약금액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단기예술인 총 보험료 = 계약금액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일반예술인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월평균소득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 월평균소득**

월단위 계약인 경우: 계약금액÷계약기간 | 월단위 계약이 아닌 경우: (계약금액÷계약기간)×30

**** 기준보수**

일반예술인의 경우 신고된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800,000원)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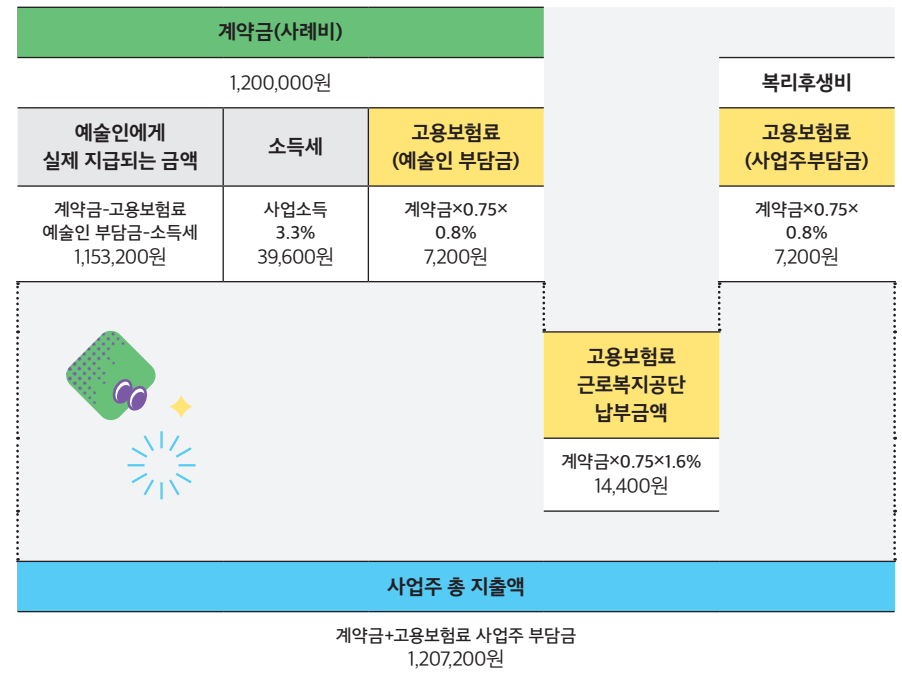
- 필요경비 및 요율 안내 | 필요경비 25%, 보험료율 1.6%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균등 부담합니다.
-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계약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단순 산식으로 계산된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기준보수 적용, 원단위 절사 등으로 인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예시

소득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가입 형태	단기예술인
계약 금액	1,200,000원	소득 유형	3.3%
월평균보수 (월평균소득*0.75)	900,000원	예술인 고용보험료율	1.6%

*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8.8%으로 공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필요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예시

3 핵심 용어

부가가치세

예시 공급가액이 5,000,000원이고 고용보험료 예술인 부담금이 30,000원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계약금)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5,000,000원, VAT 500,000원 → 총 5,500,000원
- 고용보험료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공급가액에서 고용보험료 예술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5,000,000원 - 30,000원 + 500,000원 = 5,470,000원

※ 공급가액과 지급액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오니
세무관련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처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예술인고용보험료	30,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지급액	5,470,000원	부가세(10%)	500,000원
	5,500,000원		5,500,000원

월평균소득

계약금액을 단순히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월 단위 계약인 경우: 계약금액÷계약 개월 수
-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금액÷계약 일수)×30
- * 일반예술인 적용 제외 여부 판단을 위해 산정

보수총액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서 현행 필요경비 25%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월평균보수

일반예술인(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에 현행 필요경비 25%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보험료 산정 및 기준보수 적용 여부 판단 시 사용

필요경비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5%를 일괄 적용합니다.

3 핵심 용어

기준보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하한선이 되는 월평균보수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또는 보수를 산정하거나
확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단기예술인 기준보수 적용 없음
- 일반예술인 신고된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800,000원)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

상한액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건별로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 보험료 상한액
월 731,040원
연간 8,772,480원
(2024. 1. 1. 기준,
부과액 기준)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예술인'을 말합니다.

피보험기간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보험 가입 기간 중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위해
보험 지급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

!

질문

FAQ

보험료 계산

Q14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월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50만 원 이상)을 확인하는 기준이며,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에서 필요한 경비(25%)를 제외한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과 3개월 간 총액 600만 원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했을 때,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월평균보수는 15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되는 고용보험료는 월 24,000원(월평균보수의 1.6%)이며, 이를 사업자와 예술인이 1/2씩(각 12,000원) 부담합니다. 단,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예술인의 기준보수액인 월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Q1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각각의 월평균소득이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기준인 50만 원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이 60만 원인 경우 경비 15만 원(60만 원×25%)을 공제하면 4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80만 원이 됩니다.
※ 경비 공제 후 월평균보수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경비 25만 원(100만 원×25%)을 공제하고 7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기준보수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면 경비 50만 원(200만 원×25%)을 공제하고 15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150만 원이 됩니다.

월평균소득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경비(25%)		15만 원 (60만 원×25%)	25만 원 (100만 원×25%)	50만 원 (200만 원×25%)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미적용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45만 원 →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75만 원 →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150만 원

Q16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A 예를 들어 사업주 A가 예술인 B와 2024년 7월 1일~11월 30일(5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7월에 계약금 200만 원, 9월에 중도금 300만 원, 11월에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사업주 A는 월평균보수 90만 원(600만 원÷5개월)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14,400원(90만 원×1.6%)을 납부하며, 총 보험료는 72,000원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대가 지급 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예술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0.8%를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계약금: 200만 원×75%×0.8%=12,000원 공제
 - 중도금: 300만 원×75%×0.8%=18,000원 공제
 - 잔금: 100만 원×75%×0.8%=6,000원 공제
- ➔ 총 예술인 공제 금액: 36,000원

보험료 납부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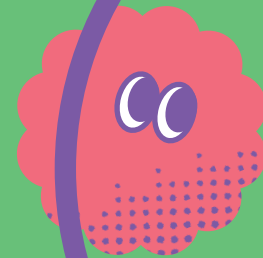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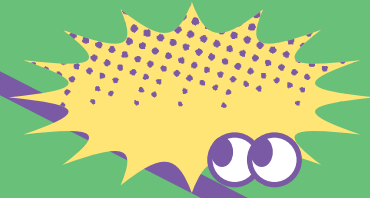
Q17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 A 계약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주민세, 소득세 등)과 고용보험료를 함께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이때 공제해야 할 예술인 부담분은 계약금액 총액에서 필요경비(현행 25%)를 제외한 금액에 0.8%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에 있는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Q18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해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신 후,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서] 메뉴를 통해 납부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② 사무대행 협력기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예술인 중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기준

사업주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

예술인 규모 제한 없이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신청방법

- 전자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미가입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보험료 지원신청'란에 체크하여 제출
기가입사업장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보험료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접수
- 서면신청: 우편, FAX 접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일 이후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소급적용 불가)

지원제외

- 지원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기준

2 사무대행 협력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업장의 보험사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사무를 돕기 위해 신고대행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서울	나이스노무법인	02-835-7700	수원	노동법률사무소 바른	031-268-7730
	노무법인 연	02-3272-2227		노무법인 문명	02-6207-7200
	노무법인 우광	02-2676-5557	성남	현지노무사사무소	031-546-8456
	노무법인 주로	02-459-5453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02-6929-3974
	노무법인 씨앤비에이치알	1544-8323	천안	푸른노무법인	041-556-0035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02-3272-8005	부산	노무법인 산	051-710-0452
	세무회계 도호	02-516-2929	창원	노무법인 에스엔 경남창원지사	055-716-1730
	에이엔 세무회계	02-2038-0127	전주	평등노무법인	063-242-1666
	한국스마트협동조합	02-764-3114	춘천	평화노무법인	033-243-0917

- 협력기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화로 문의와 의뢰가 가능합니다.
- 협력기관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무대행 서비스를 수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업무 외 세무, 급여 등 사무대행 의뢰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용보험 사무대행 의뢰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 정보와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업자정보 등이 필요 합니다. 이 외 수임 관련 상세내용은 협력기관과 협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 원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담당업무 고용보험 가입 지원, 피보험자격 관리
- 홈페이지 www.comwel.or.kr | total.comwel.or.kr (고용산재토달서비스)
- 대표번호 1588-0075
- 팩스 0505-290-3203 (예술인가입부)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업무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 홈페이지 www.nhis.or.kr
- 대표번호 1577-1000

업무 담당 기관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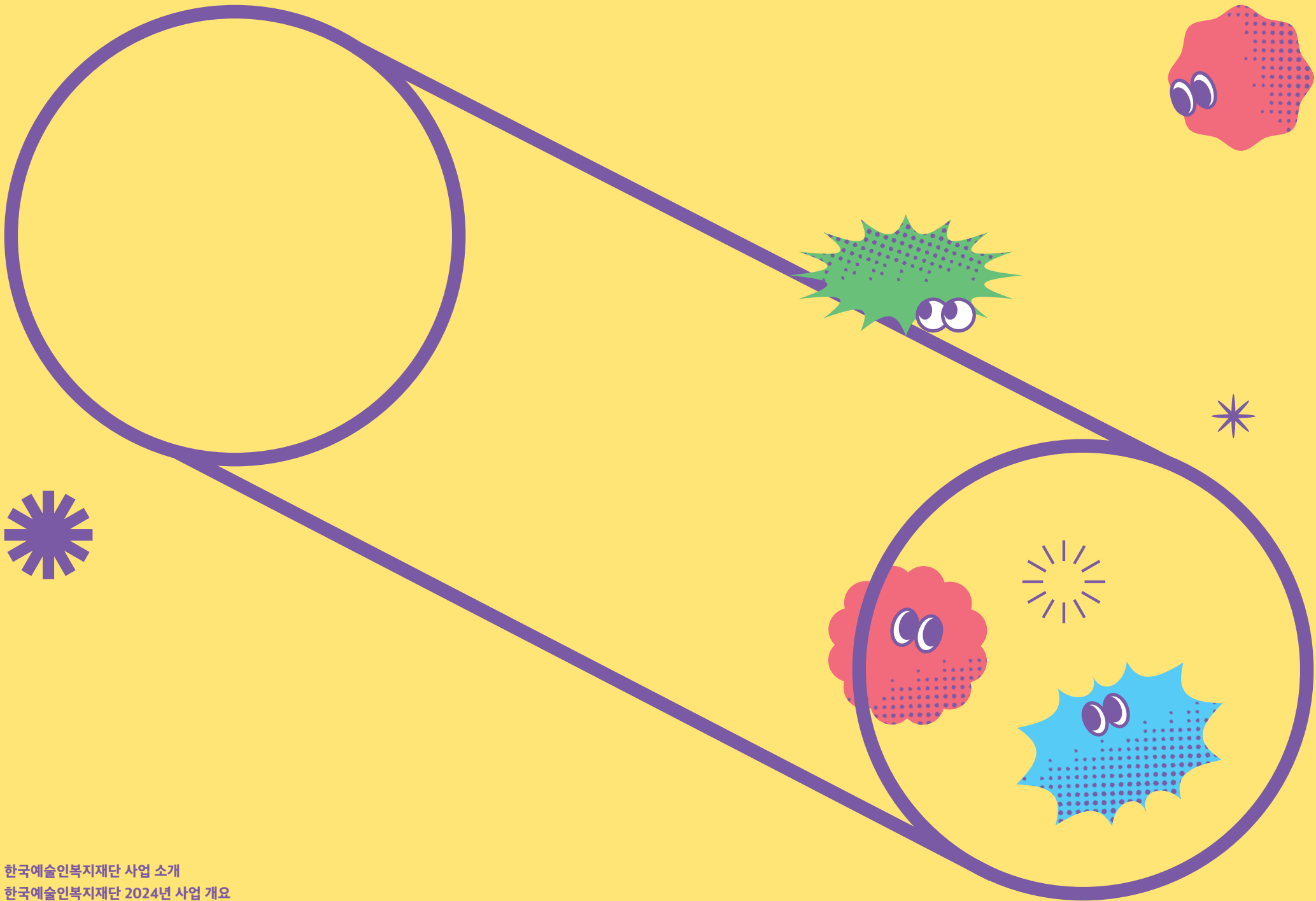
- 담당업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대표번호 13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담당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홈페이지 www.kawf.or.kr
- 대표번호 02-3668-0200



재단소개

AAA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볼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전략목표



미션·비전

MISSION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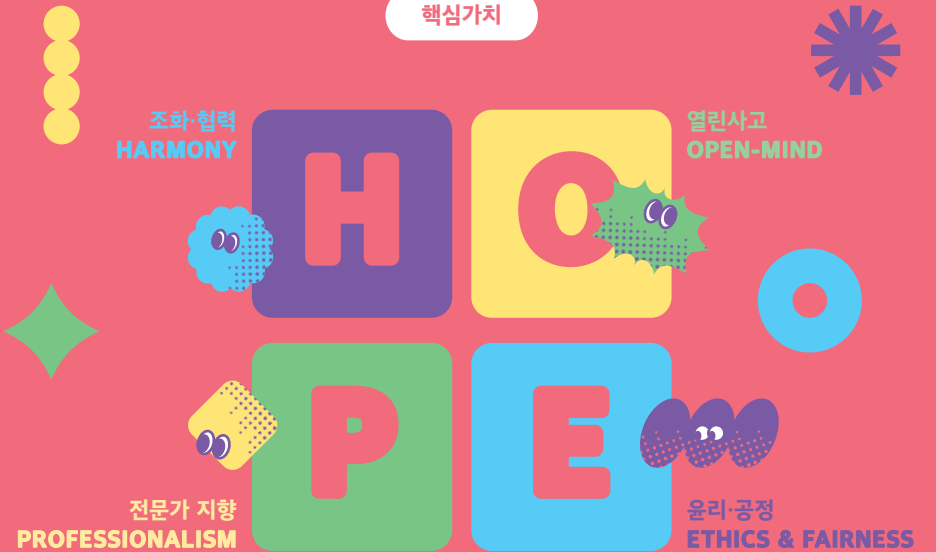
VISION

비전
따뜻한 복지지원,
튼튼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SLOGAN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핵심가치





예술인 신문고

- 지원내용** •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상담
 • 사후관리 및 피해지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등
- 지원대상** • 예술활동 관련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상담 신청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처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검토
- 공고일** 상시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 지원내용** • 예술인조합 결성 지원
- 지원대상** •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서면계약 위반신고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위반 신고, 계약 상담
- 지원대상** •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전자계약체결서비스를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 공고일** • 2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지원내용** •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 지원
 단체 찾아가는 교육
 개인 온라인 교육
 개인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 지원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 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공고일** • 3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1:1 상담 (12회 한도)
 •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 공고일** • 2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납부 보험료 30~50%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
- 공고일** • 2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지원내용**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 보험료 50~90%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및 상담
-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사업장
- 공고일** • 상시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 지원내용** •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
- 공고일** • 상반기(예정)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지원내용**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지원대상** • 이용: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 운영: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금: 무료
 - 위치: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 공고일** • 상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 참여제한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수혜자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등
- 공고일** • 3월 예정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1회)
- 지원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 참여제한: 창작준비금 수혜이력이 있는 예술인 등
- 공고일** • 하반기(예정)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 지원내용** • 리더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총 980만 원(7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단년형): 총 840만 원(6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다년형): 총 960만 원(6개월)
 - ※ 다년의 경우,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참여예술인 - 예술로 협업/기획(단년)사업: 총 720만 원(6개월)
- 예술로 기획(다년)사업: 총 840만 원(6개월)
- 지역문화재단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유효자)
 - ※ 참여제한
 -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4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기업·기관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고민을 해결하고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
- 예술로 지역사업
-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재단법인 문화재단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 공고일** • 1~2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강의 제공
-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공고일** • 3월(온라인) | 6월(멘토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응자)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700만 원)
- 전세자금대출(최대 1억 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공고일** • 생활안정자금대출 정기 | 전세자금대출 상·하반기(2회)

예술인패스

- 지원내용**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 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공고일** • 상시

※ 연중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영정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380
홈페이지	www.kawf.kr
제작	(주)인디엔피
ISBN	979-11-92242-24-8

예술인 고용보험 문이치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지원
- 피보험자격 관리

1588-0075 | total.comwel.or.kr

고용복지+센터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1350 | www.work24.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

1577-1000 | www.nhi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02-3668-0200
artinsure@kawf.kr | www.kawf.kr